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6년 8월 20일

나. 회부일자 : 1996년 8월 21일

3.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96. 6. 30시행)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부합하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현행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 목적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문개정(안 제1조)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 → 삭제
-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과 위원 위촉 방법을 개정(안 제2조)
 - 부위원장 :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회에서 위원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
-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간사를 두도록 조항신설(안 제4조, 제5조, 제7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명을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목적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로 하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은 삭제하였고,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현행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공무원과 민간인 각1인을 선출하던 것을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방법과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범위도 확대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또한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간사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중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 기간으로,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재임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토록 하였으며, 간사는 소속 직원중 1인을 두도록 하였음.

-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위원장을 가정복지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조문 자구수정 하였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주민이 위원회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는 조항은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정법령에 부합하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러나 본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기능)①항에는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였고, 동조항 6호에는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①항의 규정을 보면 청소년 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부